

항 소 장

사 건 2000가합 7582호, 손해배상
(2001가합 4818호와 병합)

원 고(피항소인) 김 ○○외 453

피 고(항 소 인) 고 양 시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합 7582호(2001가합 4818호, 병합)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의 2001. 12. 21.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항소인은 위 판결정본을 2002. 1. 2. 송달받았습니다.)

원 판 결 의 표 시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2만원 및 각 이에 대한 200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4/25는 원고들이, 1/2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원판결중 원고들의 대한 피고폐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2. 1. .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

서울고등법원

귀중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2나 6922호, 손해배상(기)
원 고(피항소인) 김 ○○외 451
피 고(항 소 인) 고 양 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시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시가 원고들에게 일정액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원활한 급수공급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시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아래에서 살펴 볼 이사건의 경위를 본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연 피고시에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는 백석교에 설치된 송수관로의 이설공사를 왕공사기간 동안 단수조치를 하기로 하고 2000. 8. 24.경부터 안내전단, 지역유선방송, 인터넷 등으로 고봉동, 식사동을 제외한 일산구 전지역 약 126,000세대에 대하

여 2000. 8. 29.부터 같은 달 29. 19시까지 34시간 급수를 중단한다는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수예정 하루 전인 2000. 8. 27.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기에 이르자 위 백석교 확장업무를 관장하던 피고시 산하 도시건설국에서는 2000. 8. 28.시경 송수관로 이설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수조치를 취소하기로 하고 단수조치 취소를 발표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비가 그치자 피고시의 도시건설국장, 상수도 사업소장 등은 밀 예고된 단수조치시한은 2000. 8. 29. 19시까지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시 단수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2000. 8. 28. 14시경 인터넷, 유선방송등으로 단수조치가 처음 예고된 대로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고시는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7시간 가량 늦은 2000. 8. 28. 16시경 시공업체에게 상수도 사업소 직원의 협조를 받아 송수관로 이설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는바, 공사 도중 사전에 예상치 못한 송수차단 밸브 편이 고장나는 등의 사고가 생겨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다음날인 2000. 8. 30. 1시경에야 공사가 끝나게 되었고, 같은 날 2시 30경에야 수도공급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시가 처음에 예상한 시간보다 최소 7시간 정도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3. 피고시의 조치에 대하여

가. 피고시의 주민들은 피고시가 처음부터 단수예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물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이 받았을 고통은 충분히 공감이가고 이에 대해 피고시도 백배 사죄하는 바이지만 과연 피고시가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우선 사고당시 피고시는 애초의 예정대로 공사를 취소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았습
니다. 피고시는 단수 예정일이었던 2000. 8. 28. 오전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처음 계획했던 대로와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불가
능하게 되었고 단수계획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수 계획을 연기하게 되
자 단수가 될 것을 예상하고 휴업을 결정하였던 공장, 상가, 목욕업소, 음식점 등에
서 근일내 다시 단수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항의가 빗발치게 되었고 오후가 되
면서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피고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정대로 다시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시는 시민들이 단수 조치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모를 경우에
생활의 불편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당시로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인터넷, 유선방송,
동사무소 전화 등)을 동원하여 단수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으며 이는 재판을 통하
여 확인되었습니다. 단수조치의 통보를 함에 있어 모든 시민이 이를 알 수 있게 한
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며 결국 행정청의 판단으로 주어진 시간내
에 가장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데 당시 위와 같은 방
법을 사용하여 단수 결정을 시민들에게 통보한 피고시의 행위는 공사의 시행이 시
급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처지가 다른 시민들의 입장을 전부 고려하여야 하는 피
고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23조 내지 제25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 및 급수중단시 예고의무는 수도사업자가
주어진 상황하에서 가능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지 반드시 그
지역내의 모든 사람이 이를 알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공사를 시행 하던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전에 예고한 시각에 급
수를 재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8. 28.
16:00경부터 9. 1. 02:30경 까지 자체 급수지원 및 소방서, 타시군, 군부대 등과
협조하여 비상급수 조치를 지원하였고 특히 노약자, 임산부, 지체부자유자 등이 거

주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공무원 1,200여명을 동원하여 방문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최대한 신속한 공사를 위해 야간 및 우중에도 쉬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전화대수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의 전화문의에 모두 응답할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전화문의에도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시의 2000. 8. 2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송수관로의 이설공사를 위한 공사기간동안의 단수조치는 수용가다수의 의견과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단수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사후적으로도 주민홍보, 비상급수 등 주민을 위한 갖가지 조치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시는 현실적으로 기대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원심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2. 6. .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